

2026.3.1.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일반 채용 공고

2026.3.1.자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일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속 및 주근무처 (종근무처)	비고
교육공무직원 (급식보조)	1명	· 비조리교 배식 업무 · 식생활관 위생관리, 세척, 정리 등 ·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리교 및 비조리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계남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주20시간 (방학중비상시)

※ 소속 및 주근무처는 공동조리교, 종근무처는 비조리교임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 1) 직 종: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 2) 계약기간: 2026. 3. 1. ~ 정년(60세)까지

❖ 수습기간의 운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1조 -

- 3) 근무형태: 방학중 비상시 직종(소속 학교의 상황에 따라 방학중에도 근무 가능)
- 4) 근무시간: 월~금요일(주 20시간, 1일 4시간, 세부사항은 근무교의 규정에 따름)
- 5) 보수(방학중 일할계산)
 - 가) 기본급: 월 1,033,000원
 - 나) 각종수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따름

- 6)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
- 7)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나. 응시요건: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다. 거주지 제한: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으로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라. 응시 결격사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및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급식보조 근무를 통해 노동자로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4 시험 일정

순	구분	세부일정	비고
1	채용공고	2026. 2. 2.(월) ~ 2. 9.(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2	서류접수	2026. 2. 2.(월) ~ 2. 9.(월) 17:00까지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접수장소: 장수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350-5273)
3	1차 서류심사	2026. 2. 10.(화)	
4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2. 10.(화)	○ 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5	2차 면접심사	2026. 2. 12.(목)	○ 장소: 추후 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 안내
6	최종합격자 발표	2026. 2. 13.(금)	○ 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 시험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2. 2.(월) ~ 2. 9.(월)

나. 접수기간: 2026. 2. 2.(월) ~ 2. 9.(월) 17:00까지

※ 접수 마지막날[2026. 2. 9.(월)]은 17:00까지 접수

다. 접수처: 장수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학교행정팀(☎063-350-5273)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7: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마감일은 17:00 접수마감)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방문 접수)

※ 대리접수 및 우편(이메일)접수 불가(본인 접수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6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김표시(- *****) 후 제출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서류접수 및 서류전형	○ 신분증	· 원본 지참(본인 확인용)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붙임 1, 2 서식 활용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조리관련자격증 “해당 경우 제출”	· 원본지참(사본 보관) · 자격증(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하여야함)
	○ 경력증명서 “해당 경우 제출”	· 원본 지참 · 집단급식시설(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소) 주15시간 이상 근무 경력만 인정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민간기관의 경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제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종사원(급식보조) 이외의 경력(홀씨빙 등)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해당 경우 제출”	· 원본 제출
면접시험	○ 공정채용 확인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 붙임 4 서식 활용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붙임 5 서식 활용
최종 합격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 6 서식 활용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최근 2년 이내)	· 원본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기본증명서	· 원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 7 서식 활용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붙임 8 서식 활용
	○ 겸업확인서 “해당 경우 제출”	· 붙임 9 서식 활용
	○ 통장 사본	· 사본 제출
	○ 신분증 사본	· 사본 제출

※ 자격 및 경력사항의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해당

7

시험방법

(기본 방침)

-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
- 평가 내용 비밀 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적용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 1) 선발인원: 급식업무 근무경력, 조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공고된 응시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2) 서류심사 배점 기준표(총3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급식(조리) 근무경력 (20점)	20 (A)	급식(조리) 근무경력 3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15 (B)	급식(조리)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미만	
	10 (C)	급식(조리) 근무경력 1개월 이상~ 1년 미만	
	5 (D)	급식(조리) 근무경력 1개월 미만 및 경력이 없는 경우	
조리관련 자격증 (10점)	10 (A)	자격증 3개이상 소지자	자격증 사본
	8 (B)	자격증 2개 소지자	
	6 (C)	자격증 1개 소지자	
	4 (D)	자격증이 없는 경우	
배점 소계	30		

※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급식보조 경력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집단급식시설(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소): 주15시간 이상 근무 경력만 인정

※ 경력제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종사원(급식보조) 이외의 경력(홀씨빙 등)

- 3) 심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개별면접 실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필수 지참. 미지참시 면접 응시 불가

2) 면접심사 배점 기준표 (총7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1. 의사표현의 정확성 2. 용모 및 품행	10	10~9	8~7	6~5	4
【업무 이해도】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2. 업무범위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	20	20~19	18~16	15~13	12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1. 기관 급식 업무에 대한 지식 2. 경험과 자격을 연계한 업무수행능력, 응용능력	20	20~19	18~16	15~13	12
【책임감과 성실성】 1. 자질 및 태도 2.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	20	20~19	18~16	15~13	12
합계	70점				

8 최종 합격자 결정

가. 방법: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응시자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의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을 경우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정,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수습기간 중 퇴직 등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1차 시험 점수와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1차 시험(서류심사) 고득점자, ③ 2차 시험(면접시험) 고득점자, ④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1) 일시: 2026. 2. 13.(금)

2) 방법: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9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 가.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라.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

10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접수증’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함
-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존 또는 파기함
-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은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 바. 최종합격자로 채용된 자는 정년퇴직(60세) 이후 축탁직 노동자로 운영되지 않음
- 사. 본 시험시행계획은 추진일정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별도 공고
- 아.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350-5273)로 문의

-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및 반환청구서(서식)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1부.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1부.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1부.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1부.
9. 겸업확인서(서식) 1부. 끝.

【붙임 1】

응시원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급식보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현주소		(우:)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					
		-					
		-					
개인 정보 처리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채용 ②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전화, 휴대전화, 경력사항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table border="1"> <tr> <td>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td> <td><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td> <td><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td> </tr> </table>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접 수 증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교육공무직원 (급식보조)	2026. .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 경력: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급식보조 근무경력을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자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원본지참)
 - 개인정보 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함.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1. 가치관, 지원동기, 직무수행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년 월 일

응시직종 : 급식보조

작성자 : (서명)

교육공무직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 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붙임7)를 작성하여 팩스(063-351-2825)또는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④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063-350-52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정채용 확인서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은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1.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친인척 관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수교육지원청(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p> <p>*공직자: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 부패행위 :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p> <p>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p> <p>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p>※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부패방지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원자

(서명)

【붙임 9】

겸업확인서

소속 :

직종 :

성명 :

위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급식보조)직종에 응시하기 전
부터 현재까지

1. 근무기관	
2. 직종	
3. 근무기간	
4. 담당업무	

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